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조달회계팀, 조달등록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조달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기획재정부령 제59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8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8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 중 "2023년 3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1.24.>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2호, 2014.1.24.>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2026년 3월 31일 -----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4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4호, 2020.3.31.>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2025년 3월 31일 -----.